

#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가이드라인

2015. 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Contents

## 목 차

|                                |    |
|--------------------------------|----|
| I. 가이드라인 개요 .....              | 4  |
| 1.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 .....           | 4  |
| 2. 금융분야 주민번호 처리 근거 .....       | 5  |
| II. 주민번호 처리 기준 .....           | 6  |
| 1.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의무인 경우 .....    | 6  |
| 2.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경우 .....   | 7  |
| 3.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 8  |
| 4.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        | 9  |
| III. 주민번호 처리 사례 .....          | 10 |
| 1. 업무주체별 주민번호 처리 사례 .....      | 10 |
| 2. 금융업권별 주민번호 처리 사례(Q&A) ..... | 12 |
| IV. 금융분야 주민번호 처리 근거 법령 .....   | 35 |
| (참고) 관계법령 .....                | 64 |

# I. 가이드라인 개요

## 1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4.8.7.부터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 처리(수집·이용 등)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정보주체가 동의하더라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번호 처리 금지

- 이에 따라 '14.8.7.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 금융위는 소관 금융법령\*(18개) 개정안 마련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주민번호 처리근거 마련·시행('14.8.7.)

\* 신용정보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 제도 시행 이후 실무에서 주민번호 수집가능 여부를 질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 점검 및 법령 해석 필요

- 한편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하더라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출 최소화\* 필요

\*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의 일환으로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개선 추진

- 원칙적으로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안전한 수집방법을 사용하도록 함

### ⇒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 금융회사 업무 관련 주민번호 처리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업무에 대해 가능여부를 명확히 하여 혼선 방지
-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 금융업무를 금융업 법령상, 업무주체별로 체계적으로 정리
- 법령상 주민번호의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등 주민번호 처리 최소화

## 2 금융분야 주민번호 처리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8.7.)으로 주민번호의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

\* 기존 정보주체 동의에 의하여 주민번호를 처리하던 업무도 금지,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까지) 파기

\*\* 다만, 단순 위반사항의 경우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6개월간 계도기간(∼’15.2.6.) 운영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위·수탁 관계에서는 위탁자의 권한과 책임 하에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필요한 업무를 위탁 가능

### □ 신용정보법

- 시행령 개정(‘14.8.7.)으로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가능

※ 금융부문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한 소득정보 통합, 신용정보집중 등을 위해 개인식별수단인 주민번호 처리가 필요

### □ 기타 금융법령

- 은행법, 보험업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18개 금융법령을 정비하여 임직원 결격사유 조회를 비롯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 마련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신고(보험업법), 공제사업의 수행(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

## II. 주민번호 처리 기준

### 1 주민번호 수집 · 이용이 의무인 경우

□ 금융실명법 제3조에 따라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의무

\*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로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

○ 신규계좌 개설시 실명기재 및 주민등록증 사본 보관이 필요하며,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의 경우 거래자의 실명 기재·확인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신규계좌 개설\* 또는 2천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 확인 의무

\*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

\*\*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

#### <거래자의 실지명의 및 신원확인이 의무인 금융거래>

##### ◇ 금융실명법 상 '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

##### ◇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거래'(법 제2조 제2호)

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3조(금융거래) 제1항

1. 대출·보증·보험·공제·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보호예수·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시설대여·연불 판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이하 "외국환거래"라 한다)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3조(금융거래) 제2항 : 「관광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

## 2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경우

-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 등 각 금융법령 상에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수반되어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가능

\* 신용정보법 상 ‘금융거래’는 금융업권 전반에 걸친 금융거래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 가능  
(여신·수신·환, 상호부금, 보험, 금융리스, 금융채권의 매입·회수, 신용카드 등)

- 고객이 **금융계약 관련 정보의 확인·변경·갱신** 등을 요청하거나 고객의 계약관련 정보를 **조회\***·등록·변경·통지하는 경우

\* 예) 신용도 조회, 우대대상 조회, 타 금융상품 가입 조회 등

- 기한의 도래 또는 조건의 충족으로 **금융계약사항을 이행**하거나 **금융계약 불이행으로 채권회수** 등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 비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업무 위탁\***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가능**

\* 예) 회원모집을 위해 카드사가 모집법인에 모집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업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등

- 다만, **수탁자의 업무는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위임자는 수탁자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짐**

※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더라도 **금융업권별로 주민번호 노출을 최소화하여 유출을 예방하고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

### 3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도서출판, 광고대행 등 금융회사가 부수업무로 수행하는 **비금융업무**
  - 금융회사의 업무이나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용정보 또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필요
- 위임·위탁이 아닌 별도의 계약으로 금융회사와 제휴한 **비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업무
  - 제휴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 고객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비금융회사에 금융회사 고객의 주민번호 제공 불가
- 비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금융거래와 유사한 업무
  -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비금융회사(예: 이동통신사, 대부업\* 등)은 해당 업무처리시 주민번호 대신 다른 수단을 활용
    -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 대부업자가 아닌 대부업자
  - 다만, 해당 업무가 가능하도록 주민번호 외의 수단을 구축

#### 비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업무 (예시)

- ① (신용정보조회) 비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의 신용정보 조회시 주민번호 외의 다른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조회
  - \* 예) ①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 조합, ②신용조회회사가 부여한 고객관리번호 등
- ② (CMS 자동이체) CMS 업무처리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
- ③ (수표 거래) 개인 간 수표 유통시 상대방의 신분증은 확인할 수 있으나, 수표 뒷면에는 계좌번호만 배서\*
- \* 다만,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표의 발행·수납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 거래자의 주민번호 수집·보관 가능

## 4 주민번호 수집 · 이용 최소화

-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상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 하더라도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할 필요**(“14.3.10.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① 원칙적으로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

- 단, 법령상 규정 준수를 위한 서식\*,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청구서 등 주민번호 기입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

\* 금융법령 또는 타법령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주민번호 기재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

② 금융회사는 고객의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수집방법을 강구**

- 고객이 금융회사의 전자단말기(key-pad) 또는 전화 다이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 신원 확인 후 전산 시스템에 입력 등

③ 비대면 거래시 본인확인은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제외한 여타의 고객정보를 활용(아이핀,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 Ⅲ 주민번호 처리 사례

#### 1 업무주체별 주민번호 처리 사례

##### 가 금융거래 당사자의 주민번호 처리가 허용되는 경우

- ☐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계약 체결을 위해 필수적인 금융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업무(단, 해당 금융거래가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정보를 반드시 파기)

(예) 신용대출 또는 카드발급 전 당사자의 신용조회, 자동차보험료 비교시 당사자의 할인할증요율 조회, 보험계약시 타 보험가입 내역 조회 등

- ☐ 고객과 금융거래를 개설하거나 금융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예) 신용/체크카드의 발급, 보험계약의 체결, 대출신청 및 실행 등

- ☐ 고객 요청에 의한 금융거래내역 조회·확인 및 금융거래 정보 변경 업무

(예)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등의 발급, 카드 청구내역 조회, 결제금액 확인, 자동이체통장 및 이체날짜 변경, 카드 등 분실신고(이용정지), 대출 연장신청 등

- ☐ 기존 금융거래 고객의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및 금융거래 관련 분쟁에 따른 조치

(예) 연체채권 매각, 연체통보서의 발행, 자체감면 및 워크아웃, 채무조정 등

- ☐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의 집중·조회·변경·삭제 업무 등

## 나 제3자의 주민번호 처리가 허용되는 경우

- ☐ 착오입금으로 인해 입금자가 제3자에게 입금액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3자의 주민번호 처리
- ☐ 제3자가 금융거래 대출자(채무자)의 대출금을 대신하여 상환하는 경우 제3자의 주민번호 처리
- ☐ 보증인, 담보제공자 등 금융계약 체결을 위해 필수적인 제3자의 주민번호 처리 등

(예) 보증을 통한 대출시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회

## 다 금융회사 간 주민번호의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

- ☐ 양 기관 모두 당사자에 대한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 기관 간 금융계약 체결을 통해 주민번호의 전달·처리

(예) 보험사를 통한 신용카드 발급, 카드사 신용카드 실적에 따른 은행 예금 우대 금리 부여

## 2 금융업권별 주민번호 처리 사례(Q&A)

가

공 통

**【Q1-1】 금융거래 계약체결, 금융거래정보 조회(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처리하는 경우 대리인의 본인확인 및 대리권 확인, 향후 분쟁 등의 대비를 위해 대리인의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가요?**

**【A】** 금융회사 등이 신규로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및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호 등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명의인 및 대리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법인계약관리인으로서 법인 소속직원, 지정청구 대리인 등)의 신원과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좌 신규개설 후 고객과의 계속거래를 위해 수반되는 사무(거래 정보조회, 증명서 발급 등)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에 따라 대리인의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금융사기의 방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최소한으로 수집·이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A씨가 미성년인 자녀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따른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확인·대리권확인을 위해 본인 및 법정대리인 A씨의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Q1-2】 100만원을 초과하는 무통장(무매체) 입고를 위한 ‘입출고 전표’ 작성 시 고객의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가요?**

**【A】** 무통장 입고의 경우, 100만원 초과 송금 등 실지명의 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 시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Q1-3】 법인의 금융거래를 대리인이 수행할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인의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가요?**

**【A】** 대리인이 수행하는 법인의 업무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 등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거래와 관계없는 업무일 경우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 A법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법인카드 한도를 증액하는 경우, 이는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계속거래 해당하여 대리인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에 따라 대리인의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Q1-4】 금융회사는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 사본 보관이 가능한가요?**

**【A】**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번호 처리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주민번호가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을 징구·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번호가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징구 및 보관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하여야 합니다.

※ 실명확인증표 사본 보관 시 지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14.8)

**【Q1-5】 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권양수인에게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이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민번호를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 등에 해당하여 주민번호 처리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목적 및 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주민번호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예) A씨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권을 ○○저축은행이 양도받는 경우 대출 업무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은행으로부터 A씨의 주민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음

**【Q1-6】 금융회사가 아닌 채권추심회사, 대출모집법인 등 외부업체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회사도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나요?**

**【A】**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한 금융기관이 외부업체에 업무 (대출모집서류 접수, 채권추심 등)를 위탁한 경우, 위탁 업무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회사도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탁회사의 주민번호 처리 업무는 위임받은 범위에 한정되며, 위탁사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6항 및 신용정보법 제43조 제4항 등에 따라 수탁회사의 업무 처리에 따른 책임을 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예) A은행에서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에 "본인확인 및 자서대행"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는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수탁자인 신용정보회사는 고객의 주민번호가 기입된 관련 서류를 처리할 수 있음

**【Q1-7】 금융거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출한 서류상\*에 포함된  
주민번호의 경우 뒷자리를 삭제하고 보관해야 하나요?**

\*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세무 관련 증명서 등

**【A】** 법령에 따라 제출 서류 고유양식에 포함된 주민번호라면 서류상 기재된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계약자 본인 것 외의 주민번호가 표기된 경우, 계약자 외의 자에 대한 주민번호 처리 근거 법령이 없다면 해당 주민번호의 뒷자리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 금융회사가 계약자 본인 이외 가족의 주민번호가 표기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 받은 경우로서 해당 가족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검게 칠하여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보관

### **【Q1-8】 콜센터를 통한 상담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가요?**

**【A】**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상담일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지만, 단순 상담과 같이 금융거래와 관계없는 업무라면 주민번호를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 전화를 통한 주식매수 주문, 예금잔액 확인 등은 금융거래에 해당하여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가능하지만 영업점 위치 문의, 담당 직원·부서 안내 등 단순 상담의 경우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금지됨

### **【Q1-9】 인터넷을 통해 타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경우 고객의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가요?**

**【A】** 금융회사와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거나 체결한 고객이 동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하기 위하여 타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것은 해당 금융회사와의 금융계약에 수반된 업무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고객의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고객과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금융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지 않고 이용시마다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바, 이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와의 금융계약에 수반된 업무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객의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하지만,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거래 계약 미체결 고객의 경우 주민번호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며,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던 자의 주민번호는 관계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Q1-10】 계좌잔액 조회, 완납금액 문의, 납입일 조회 등의 업무가 ‘금융거래’에 해당이 되나요? 더불어 주민번호의 처리가 가능한가요?**

**【A】** 고객이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 확인,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금융거래 과정의 일환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에 따라 주민번호의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금융거래를 위한 업무에 한정되며 금융거래와 관계없는 업무의 경우 주민번호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A씨가 이자 납부일 변경 및 대출잔액 확인 등을 할 경우 ○○은행은 A씨가 대출받은 본인인지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이자 납부일 변경 등을 처리하여야 함

**【Q1-11】 예금주(고객) 사망에 따라 상속처리(예금 명의변경 또는 지급)을 하는 경우 상속권리자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가요?**

**【A】** 금융회사의 상속에 따른 예금 등의 지급업무는 권리자에게 금융거래 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등에 따라 신청인이 정당한 상속인 인지 여부 및 상속권리자 본인 확인 등을 위하여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은행의 예금계좌를 가진 A씨가 사망함에 따라 A씨의 예금을 상속받은 자녀 B와 C가 예금 명의변경을 위해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에 따른 상속권리자 확인 및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을 위하여 B와 C의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Q2-1】** 고객이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 등 계약 종료 시까지 고객과 은행 간에는 동 금융계약과 관련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조화·변경 신청, 통장 또는 비밀번호 등 분실신고, 예금만기 통지 등 고객관리서비스 등의 계약관리업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은행 등은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객의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가요?

**【A】** 은행은 은행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금계좌 개설과 같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각종 증명서의 발급, 분실신고 등 제반 계약관리업무는 금융계약 이행에 수반되는 업무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주민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Q2-2】** 대면거래 시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있는 업무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비대면 거래 시에도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가요?

**【A】** 금융고객과의 대면거래 시 법령상 주민번호 처리근거가 있는 업무\*는 비대면 거래(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시에도 동일하게 주민번호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통한 주민번호의 저장은 불가능합니다.

\* 예) 예금 신규개설을 위한 실지명의 확인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실명확인된 계좌에 기반한 계속거래(예금조회, 자금이체, 대금납부 등)을 위한 본인 확인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등

**【Q2-3】 고객이 착오로 타행 계좌로 오류 송금하여 송금 신청은행에 타행금융공동망을 통해 입금자의 자금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가요?**

**【A】** 타행 고객 앞 자금 송금은 은행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은행의 환업무에 해당하며, 고객이 착오로 인한 오류송금에 대하여 송금을 신청한 은행에 대하여 타행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반환을 신청하는 것은 환업무에 수반하여 처리하는 업무이므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자금 반환을 신청한 고객의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Q2-4】 고객과 은행과의 예금거래를 위하여 '야간금고 이용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의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가요?**

\* 야간에 입금이 발생하는 일부 고객이 본인 계좌에 예치할 금액을 미리 야간금고에 보관하였다가 다음 날 은행 수납원이 야간금고에서 동 금액을 출납하여 입금하는 거래

**【A】** 야간금고 이용 약정은 은행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의 예금 계약에 수반되는 업무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고객의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Q2-5】 고객의 요청으로 연금계좌 또는 개인연금저축을 타 금융회사로 이체(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이전)하거나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의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나요?**

**【A】** 소득세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계좌 또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체(이전)와 연금계좌의 승계는 고객의 요청에 의한 금융계약의 이행으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금융회사는 고객의 주민번호(승계의 경우 상속인 주민번호 포함) 처리가 가능합니다.

**【Q2-6】 금융계약이 종료된 고객이 본인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조회\* 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의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나요?**

**\* 금융거래내역(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 조회, 특정 일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요청 등**

**【A】** 은행법 제27조 제2항에 의한 예금 및 대출 등에 따른 계약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발급에 따른 계약의 종료 후 금융거래내역 조회와 같은 금융계약 이행내역 조회업무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고객의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기간이 경과한 고객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보관하거나 파기하여야 합니다.

**【Q2-7】 고객이 은행을 대리점으로 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가입내역 등 주민번호가 포함된 고객정보를 은행에서도 보관이 가능한가요?**

**【A】** 보험대리점인 은행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므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보험계약의 유자관리 목적으로는 주민번호를 포함한 고객정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이후의 보험계약의 유자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의 수탁업무로 주민번호를 포함한 고객정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Q2-8】 고객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IC현금카드 등을 유효기간 종료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은행 등은 고객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번호의 처리가 가능한가요?**

**【A】** 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재)발급 업무를 위하여 고객의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37조의2 제4항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금융회사 고객의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Q2-9】 휴면예금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무거래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휴면예금 처리하였으나 '12년 대법원 판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예금(이하 '휴면성 예금')과 관련하여 은행이 원권리자에게 정보제공·조화·환급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에 의한 금융거래에 해당 하는지요?**

**【A】** 휴면예금 및 휴면성예금 관련 업무는 은행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예금계약의 사후관리를 위한 업무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주민 번호의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Q2-10】 CDD(Customer Due Diligence : 고객확인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주민번호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융회사는 주민번호 처리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을 징구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CDD를 이행하기 위해 주민 번호가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을 징구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거래확인서 등의 서식 뒷면에 실명확인증표 앞면을 복사(뒷면 정보 필요시 지문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Q2-11】 수입보증금 적립·환급 등의 업무 시 주민번호의 처리가 가능한가요?

【A】 은행은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급보증서인 수입신용장 발행 시 채권 보전을 위해 고객의 보증금을 적립하며 이로 인해 고객과의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수입보증금 적립·환급 등의 업무는 수입 결제가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 관련 보증금으로 수입신용장 할인을 통해 내도된 어음을 결제하거나 결제 이후 보증금이 남을 때에는 잔여 보증금을 실제 개설 의뢰 고객에게 환급하는 금융거래 업무로 불가피할 경우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Q2-12】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시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가요?

【A】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은 수입신용장 거래 시 파생되는 부수 거래로 수입화물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도착하여 수입상이 화물을 인수할 수 없을 때 수입상이 화물을 선취할 수 있도록 선사에게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 보증행위입니다.

채무 보증행위는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금융거래 행위이므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Q2-13】 인감서명신고서를 업체로부터 수령해야 하는데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가요?**

**【A】** 인감서명신고서는 고객과 은행 사이 금융거래에 있어서 대표자와 대리인의 서명 및 인감을 사전에 신고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신고서류로서 실명확인 방법인 사용인감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대리 행위와 대리인의 대리권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대표자와 대리인의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Q2-14】 고객이 본인의 외환거래 내역 정보를 해외은행으로 전송하거나 FAX, E-MAIL, SMS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외국환수수료 자동인출 약정 시 은행은 고객의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가요?**

**【A】** 고객의 요청으로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 확인 및 변경하는 업무는 신용정보법상 금융거래에 해당하여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에 따라 주민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외국환수수료 자동인출 약정 또한 금융업무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주민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Q2-15】 내국신용장의 발행, 조건변경, 취소, 매입 및 추심행위 등의 업무처리시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가요?**

**【A】** 내국신용장 거래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 완제품 또는 원자재 생산업체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 약속 행위로 은행법 제27조의2에 근거합니다. 관련 지급보증서를 기반으로 수출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물품 용역 등의 채권을 할인 또는 추심을 하여 대금결제를 보장받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무역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 거래들은 채무의 지급보증 행위와 할인 및 결제 등이 이루어지는 금융업무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Q2-16】 은행 등이 예금주의 요청으로 본인 명의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은행 등은 질권설정자(채무자, 예금주)의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가요?**

**【A】** 예금주의 신청에 의하여 예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업무는 은행법 제27조 제2항에 의한 예금계약에 수반되는 계약관리 업무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은행 등은 관련 대상자인 질권설정자(채무자, 예금주)의 본인확인 등을 위하여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Q2-17】 외부기관과 은행이 협약(우량기업대출, 이주비대출 등)을 통해 특정고객에게 대출을 취급할 경우, 은행이 타 금융회사에 대상자 추천 중복 확인 등을 위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가요?**

**【A】** 은행이 외부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은행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대출 업무 수행 시 대상자 특정과 이차보전(利差補填) 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에 따라 주민번호의 처리가 가능하며 은행은 관련 업무 시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업무와 관련하여 협약기관이 대출대상자의 주민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기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근거 법령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Q3-1】** 계좌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였을 때, 빠른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한 계좌개설 예약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좌개설을 위하여 주민번호를 포함한 고객의 정보를 미리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고객의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가요?

**【A】** 비록 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좌개설 사전 예약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고객이 계좌개설을 반드시 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금융실명법에 따른 주민번호 처리 업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동의를 받더라도 위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번호 수집은 불가능합니다.

**【Q3-2】** 금융투자회사는 자사의 신규 채용인력의 채용 결정 전 비위 행위 조회, 또는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 체결 전 비위 행위 조회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의 비위행위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상자의 주민번호를 통한 조회가 가능한가요?

**【A】**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시스템을 통한 비위행위 조회는 법령상 주민번호 처리에 대한 근거가 없는 업무로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시스템에서 비위행위 조회 시 주민번호 대신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Q4-1】 계약자外 타인의 계좌를 통한 금전거래(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등)시 타인의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가요?**

**【A】**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2조 제1호의 보험상품의 계약체결, 유지·관리 및 보험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타인 계좌를 이용한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시 타인의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의 금융거래에 해당하여 주민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보험계약자(A)의 보험료를 피보험자인 가족(B)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 납입을 위한 이체를 시행하는 경우 가족(B)의 주민번호도 처리 가능함

**【Q4-2】 고객이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험료 비교조회시, 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으로부터 보험 가입경력, 할인할증 등 정보 조회가 필요한데, 이 경우 보험 회사는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가요?**

**【A】** 보험회사가 개인용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 산출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제86조 제2호에 따른 보험정보망<sup>\*</sup>(요율산출기관)을 통해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의 금융거래에 해당하여 주민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sup>\*</sup>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관련 계약·사고·갱신을 정보, 사고운전자피해자 정보, 가입경력 정보, 교통법규위반 정보 등을 집중·관리

예) 개인용자동차보험의 신규 또는 갱신가입을 원하는 고객이 해당 보험회사 웹사이트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개별 할인·할증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Q4-3】 (보안 첨부메일 송수신 관련)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 보험금 지급내역 등 각종 증명서를 송부할 때, 보안 설정된 전자문서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의 주민번호 뒷자리 처리가 가능한가요?**

**【A】**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2조 제1호의 보험상품의 유지·관리 및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증명서의 보안 첨부메일을 송부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주민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의 본인확인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증권"을 암호화된 보안메일을 통하여 송신받은 후, 동 전자우편을 열람할 때 비밀번호 입력창에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는 경우

**【Q4-4】 (대리인을 통한 업무) 고객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보험거래 관련 증명서 발급, 보험금 지급 등 업무처리시 대리인의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가요?**

**【A】**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제2조 제1호의 보험상품의 계약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고객의 대리인을 통하여 보험계약 체결 및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리권 확인 등의 목적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 확인을 위하여 대리인의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합니다.

예) 보험고객(A)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B)이 보험고객(A)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대리인(B)의 주민번호도 처리 가능

**【Q4-5】 (콜센터 상담 업무) 고객의 계약상담, 사고접수, 민원접수 또는 각종 서비스 상담 관련 업무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가요?**

**【A】**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2조 제1호의 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 이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에 해당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계약상담, 사고접수, 증명서 발급 등 금융거래의 경우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금융거래에 해당하는 회사위치 안내, 부서·직원 안내, 계약·사고와 무관한 기타 민원 등 단순상담의 경우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 보험사고 접수시 해당 보험회사는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 가능

**【Q4-6】 (자동차보험 출동업무 관련) 자동차보험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회사 등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긴급조치하는 업무 수행시 주민번호의 수집이 가능한가요?**

**【A】**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2조 제1호의 보험상품 계약의 유지·관리,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처리를 위한 현장출동을 하는 경우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비금융사(출동업체 등)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위임·위탁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되며, 긴급출동(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등) 관련 사무 수행시에는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 자동차사고 발생시 사고현장 초동조치를 하는 현장출동업무에서 주민번호 처리 가능  
그러나 기름이 없거나 차량 운행이 불가할 때 현장에 출동해서 긴급조치나 렉카 차량을 통해 카센터까지 견인 등을 해주는 긴급출동 서비스의 경우 주민번호 처리 불가

**【Q4-7】 (멤버십 서비스 관련) 보험사의 멤버십 회원 가입시 카드사를 통해 멤버십 카드(신용 및 선불카드 기능)를 발급하여 제휴업체를 통해 각종 할인혜택 및 부가서비스 등을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업무 수행시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가요?**

**【A】** 신용카드와 연계된 멤버십 서비스의 경우는 신용카드사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탁관계가 있는 경우(보험사가 수탁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용카드사의 카드가입 업무수행을 위해 보험회사의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사와의 업무 위탁관계가 없거나 선불카드 형태로 발급된 멤버십 서비스의 경우는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 신용카드사(A)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B)는 카드발급 사무를 위해 고객(C)의 주민번호 처리 가능

**【Q4-8】 보험업법상 불공정 대출 금지 목적으로 구속성 보험계약 가입 방지를 위한 차주(僱主) 및 차주(僱主) 관계인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가요?**

**【A】** 보험업법 제110조의2(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에 따라 불공정 대출 금지 목적으로 구속성 보험계약 가입방지를 위해 차주 및 차주 관계인의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의 금융 거래에 해당하여 주민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불공정 대출 금지 목적으로 구속성 보험계약 가입방지를 위한 사무를 위해 차주 및 차주 관계인의 주민번호 처리 가능

**【Q5-1】 카드사 회원이 아닌 일반 고객의 주민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비회원의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가요?**

**【A】** 비회원(비고객)의 경우 법령상 주민번호 처리근거가 없으므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비회원이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에 따른 금융거래 관련 보증행위, 카드도용 범죄행위 등 제3자의 본인확인이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에 따라 주민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Q5-2】 개인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의 모집 및 심사과정에서 본인확인 또는 가족(가족카드의 경우) 등의 확인, 신용조회를 위하여 주민번호의 처리가 가능한가요?**

**【A】**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른 카드발급업무와 관련하여 카드의 모집, 심사, 발급 과정에서 본인확인 또는 신용조회를 위하여 신용정보법 제37조의2 제4항에 따라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회원 가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련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카드회사는 여신금융업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업무 분류안”을 참고하여 카드의 사용등록 및 배송에 필요한 경우에는 생년 월일,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Q5-3】 제휴, 할인, 적립 등 개인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의 부가서비스 신청 및 확인 또는 통신비, 보험료 등의 자동납부 신청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카드회사가 고객의 요청 등에 의한 제휴, 할인, 적립 등의 부가서비스나 자동납부 신청을 처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에 따라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신금융업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업무분류안”을 참고하여 가능한 카드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상기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4】 개인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에 현금카드 기능을 추가하거나 제휴사와 금융할부 약정 체결을 위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 주민번호의 처리가 가능한가요?**

**【A】** 신용카드와 현금카드의 기능연계 신청 및 금융할부제휴사와의 약정체결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로서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따라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Q5-5】 개인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의 부정사용, 이상거래, 사고조사 및 보상과 관련하여 조사업무 또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이 필요한데, 이 경우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가요?**

**【A】** 신용카드의 부정사용방지, 사고조사 및 보상 등은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업무로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및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주민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Q5-6】 기업신용카드의 신청을 위해 신용조회나 본인확인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대표자 및 기업신용카드 담당자의 주민번호처리가 가능한가요?**

**【A】** 기업신용카드의 대표자 및 담당자의 경우 본인확인과 간이심사 등을 위하여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대표자 및 담당자의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 Ⅳ. 금융분야 주민번호 처리 근거 법령

|    | 법령명                                             | 금융위<br>소관부서  | 비고                           |
|----|-------------------------------------------------|--------------|------------------------------|
| 1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정책과        | ‘14.8.7.<br>개정·시행<br>(총 18개) |
| 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신용정보팀        |                              |
| 3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 전자금융과        |                              |
| 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자본시장과        |                              |
| 5  | 은행법 시행령                                         | 은행과          |                              |
| 6  | 보험업법 시행령                                        | 보험과          |                              |
| 7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중소금융과        |                              |
| 8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중소금융과        |                              |
| 9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정시장과        |                              |
| 10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민금융과        |                              |
| 11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정책과        |                              |
| 12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구조개선지원과      |                              |
| 13 |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 자본시장과        |                              |
| 14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br>관한 법률 시행령          | FIU<br>기획행정실 |                              |
| 1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민금융과        |                              |
| 16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 구조조정지원팀      |                              |
| 17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중소금융과        |                              |
| 18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br>특별법 시행령          | 전자금융과        |                              |
| 19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은행과          | 기존<br>(총 13개)                |
| 20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금융정책과        |                              |
| 21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정시장과        |                              |
| 2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br>및 시행령            | FIU          |                              |
| 23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금융정책과        |                              |
| 24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산업금융과        |                              |
| 25 |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 산업금융과        |                              |
| 26 |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본시장과        |                              |
| 27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 산업금융과        |                              |
| 28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 산업금융과        |                              |
| 29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 산업금융과        |                              |
| 30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br>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조조정지원팀      |                              |
| 31 | 공인회계사법 및 시행령                                    | 공정시장과        |                              |

- ※ 2014.8.7. 개정·시행된 조항은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하였으며, 업무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한 후 관련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한국산업은행과의 합병('15.1.1.)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제외하였습니다.

##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9조1항        | 금감원장                                 | 등기       | - 대리인 선임시의 등기                                                                                                                                                                                                                       |
| 22조의2<br>1항 | 금융위,<br>증선위,<br>금감원장                 | 조치       | -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에 의한 긴급조치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br>- 금감원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및 집행정지와 이에 따른 사후 조치                                                                                                                                  |
|             |                                      | 감독<br>검사 | - <u>검사, 제재, 보고 및 자료 제출과 이에 따른 사후 조치</u><br>- 금융위, 증선위의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br>- 금감원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과 이에 따른 사후 조치<br>-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장의 검사 결과 및 시정명령, 징계요구 등 조치사항 보고와 이에 따른 사후 조치<br>- 금감원 업무관련 지도·감독에 필요한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
|             |                                      | 민원<br>처리 | - <u>금융위 소관 사무 및 금감원 업무 중 민원사무의 처리</u>                                                                                                                                                                                              |
|             |                                      | 조정       | - 금감원장의 분쟁 조정<br>- 조정위원회의 운영                                                                                                                                                                                                        |
|             |                                      | 협조       | -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 금융통화위원회간 자료협조<br>- 관계 행정기관, 단체 등에 대한 조사 의뢰, 자료요청 및 협조의뢰<br>- 검사, 제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             |                                      | 등기       | - 금감원의 등기                                                                                                                                                                                                                           |
| 22조의2<br>2항 | 대통령,<br>국무총리,<br>금융위<br>위원장,<br>금감원장 | 임명       | - <u>금융위 및 증선위 위원, 금감원 임원 등의 추천·제청·임명에 관한 사무</u>                                                                                                                                                                                    |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37조의2<br>1항       | 금융위,<br>금감원장,<br>신용정보<br>협회        | 인허가                | - 신용정보업의 허가<br>-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분할·합병 등의 인가<br>-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및 업무 정지<br>- 신용정보회사의 허가 또는 인가 취소, 위임직채권<br>추심인의 등록·취소관련 청문에 관한 사무                                                                              |
|                   |                                    | 승인                 | - 지배주주 변경승인<br>- 임원 겸직의 승인                                                                                                                                                                                 |
|                   |                                    | 등록<br>신고           | - 겸업 신고의 수리<br>-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
|                   |                                    | 조치<br>명령           |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정정, 삭제 처리에 관한<br>시정요청 및 금융위의 시정명령                                                                                                                                                           |
|                   |                                    | 감독<br>검사           | -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에 관한 사무<br>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
| 37조의2<br>2항       | 신용정보<br>회사                         | 채권추심<br>금융거래<br>확인 | - <u>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금융거래와 관련하여<br/>수행하는 채권추심업에 관한 사무</u><br>- <u>신용정보의 수집, 채권추심 등 겸업 업무 중 금융<br/>거래와 관련된 사무</u><br>- <u>임직원 채용·고용 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u><br>※ 개인으로부터 직접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는<br>경우 그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 37조의2<br>3항       | 신용정보<br>집중기관,<br>신용정보<br>교환<br>대상자 | 신용정보<br>관리<br>활용   | - <u>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한 사무</u><br>※ 개인으로부터 직접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는<br>경우 그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 제37조<br>의2<br>제4항 | 금융기관,<br>공제조합,<br>채권등록<br>기관 등     | 신용정보<br>이용         | - <u>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u><br>※ 개인으로부터 직접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는<br>경우 그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 3-1. 전자금융거래법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16조 1항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 전자화폐 발행 | - 5만원 초과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의 식별번호와 실지명의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 |

### 3-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31조 1항 | 금융위, 금감원장    | 인허가 등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관의 제정 및 변경</li> <li>-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전자금융업자의 합병·해산·폐업 등의 인가</li> <li>- 전자금융업의 예비허가</li> <li>- 전자금융업 및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말소</li> <li>- 합병, 해산 또는 전자금융업무의 폐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와 양수에 대한 인가 및 예비인가</li> </ul> |
|        |              | 감독 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규 및 명령준수,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과 관련한 감독·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li> <li>- 시정명령,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조치,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li> <li>-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금감원, 한국은행의 공동조사</li> <li>- 회계처리의 구분 보고 및 건전경영지도</li> </ul>          |
| 31조 2항 | 금감원장, 한국소비자원 | 분쟁처리 조정 | -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        | 금감원장         | 검사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및 재무상태, 외부주문 등에 대한 감독·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li> <li>- 시정명령, 주의 또는 경고,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등의 조치</li> </ul>                                                                                                          |
| 31조 3항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 발급 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이용자의 신청으로 접근매체의 발급시 본인 확인</u></li> <li>- <u>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u></li> </ul>                                                                                                                              |

#### 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194조 10항 | 발기인         | 등기 | - 투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등기               |
| 202조     | 청산인, 청산 감독인 | 해산 | - 투자회사 해산관련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보고, 등기 |
| 268조 1항  | 사모투자 전문회사   | 설립 | -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정관 기재     |

####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163조 1항   | 의결권 권유자등       | 위임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따른 위임장의 기재                                                                                                                                          |
| 238조      | 청산인            | 해산    | - 해산 보고서 청산인 기재                                                                                                                                                    |
| 387조의2 1항 | 금융위, 금감원장, 증선위 | 인허가   | - 금융투자업의 인가, 예비인가 및 등록<br>-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및 예비인가<br>- 증권금융업무의 인가<br>- 신용평가회사의 인가 및 예비인가<br>- 자금중개회사의 인가<br>-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등 단기금융업무의 인가<br>- 거래소의 인가 및 예비인가 |
|           |                | 승인    | - 대주주의 변경승인 및 보고<br>-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초과 승인 및 시정<br>-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승인                                                                                           |
|           |                | 등록 신고 | -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등록<br>-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br>-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           |                | 임명 지정 | - 준법감시인의 임면 통보<br>-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통보<br>-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
|           |                | 감독    |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br>- 증권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의 제출                                                                                                     |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보고서,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 공시 서류 등의 제출</li> <li>-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의 규정 위반 관련 금융투자업자 또는 대주주의 자료 제출 명령에 관한 사무</li> <li>- <u>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문서, 철회신고서 및 공개매수결과보고서의 제출</u></li> <li>- <u>의결권권유자의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 의견표명서면의 제출</u></li> <li>-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li> <li>-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li> <li>- 회계감사를 한 회계감사인 또는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 보고, 조치</li> <li>- 주권상장법인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li> <li>- 주권상장법인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li> <li>- 동일 품목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li> <li>- 공매도 제한 상장증권 관련 순보유잔고 통보 등</li> <li>- 투자회사,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보고</li> <li>-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의무거래, 청산 대상거래에 관한 거래정보의 보고</li> <li>-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신용공여,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li> <li>- 상호 및 최대주주 변경, 본점 이전, 임원 선임 및 해임 등에 따른 보고 금융투자업자의 보고</li> </ul> |
|    |    | 검사<br>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업(부수업무 포함)의 수탁자,투자권유대행인, 집합투자기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외국 집합투자기구, 한국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투자 관계단체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검사, 조치, 처분</li> <li>-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인수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및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 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조치</li> <li>-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공개매수사무 취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li> <li>- <u>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 관련 정정요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결권권유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조사 및 조치</u></li> </ul>                                                                                                                                                                                                                                                |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법 및 관련 명령이나 처분 위반으로 인한 자료제출 요구, 조사, 조치 및 공표</li> <li>- 거래소에 대한 보고, 검사 및 조치, 임직원에 대한 조치</li> <li>-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인수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자료의 제출 또는 그 장부·서류의 조사</li> </ul>                                                                                       |
|              |          |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확인</u></li> </ul>                                                                                                                                                                                                            |
|              |          | 조치 명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공개매수 적용대상,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 신고서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주식 등 처분명령</u></li> <li>- <u>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대량보유 보고 위반 등으로 추가 취득한 주식 등의 처분명령, 조사 및 정정 보고</u></li> <li>- 종합금융회사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와의 거래, 신용공여 및 전담중개업무 등의 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li> <li>-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li> </ul> |
|              |          | 등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li> <li>- 상장증권 및 상장예정증권의 취득, 처분을 위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등록</li> </ul>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불공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인한 신고·제보의 접수·처리·통지 등</u></li> <li>- <u>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위한 금융투자상품의 잔고 입증 자료 및 계좌정보의 제출</u></li> </ul>                                                                                                                                                  |
| 387조의2<br>2항 | 금감원장, 협회 | 자료제출 조사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인수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li> <li>-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공개매수사무 취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 등</li> <li>- 의결권권유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증권 발행 금지 등의 조치</li> </ul>                                                             |
|              |          | 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소에 대한 보고 및 검사</li> <li>-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자의 수탁자, 투자권유대행인, 투자회사등,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 협회,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li> </ul>                                                 |
|              |          | 매매명세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및 소속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확인</u></li> </ul>                                                                                                                                                                                                                     |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387조의2<br>3항 | 협회,<br>장외파생<br>상품심의<br>위원회 | 사전심의       | - 신용위험 또는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사전심의업무                                                                                                                                        |
|              | 협회                         | 등록<br>보고   | -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br>-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
|              |                            | 기타         | -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 등의 등록 및 관리, 투자자 교육 및 이를 위한 재단 설립·운영, 금융투자업 관련 연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및 주요직무 종사자의 징계기록 유지 및 관리,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의 비교공시,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공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직무 및 윤리 교육, 투자광고 자율심의,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에 따른 사무 |
|              |                            | 조정         | - <u>분쟁의 자율조정</u>                                                                                                                                                                                                                     |
|              |                            | 매매명세<br>확인 | - <u>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확인</u>                                                                                                                                                                                                          |
| 387조의2<br>4항 | 거래소                        | 위임         | -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제출                                                                                                                                                                                                                   |
|              |                            | 보고<br>신고   | -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br>-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br>-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 보고서의 제출<br>-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br>-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 상황 보고<br>-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
|              |                            | 매매명세<br>확인 | - <u>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u>                                                                                                                                                                                                              |
|              | 거래소,<br>시장감시<br>위원회        | 심리<br>감리   | - <u>거래소 정관에서 정한 업무 중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조사·감리</u><br>- 이상거래 혐의 증권종목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 파악, 회원의 거래소 업무관련규정 준수 확인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 감리                                                                                                  |
|              |                            | 조정         | - 분쟁의 자율조정                                                                                                                                                                                                                            |
| 387조의2<br>5항 | 예탁<br>결제원                  | 발행<br>등록   | - <u>예탁증명서 발행</u><br>- <u>예탁결제원에의 예탁, 증권 등의 발행 또는 등록</u><br>- 실질주주증명서 발행                                                                                                                                                              |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                      | 권리행사             | - 예탁증권 등의 권리행사<br>- 실질주주의 권리행사<br>- 실질주주명부 작성 및 동일인에 대한 권리행사<br>- 실질수익자의 권리행사                                                                |
|               |                      | 확인               | - <u>예탁결제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확인</u>                                                                                                           |
|               |                      | 기타               | - 수익자명부의 작성<br>- <u>증권 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u><br>-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
| 387조의2<br>6항  | 금융투자<br>상품거래<br>청산회사 | 정보관리             | - <u>청산의무거래 및 청산대상거래 정보의 보관·관리·보고</u>                                                                                                        |
|               |                      | 확인               | - <u>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확인</u>                                                                                                    |
| 387조의2<br>7항  | 증권금융<br>회사           | 확인               | - <u>증권금융회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확인</u>                                                                                                           |
| 387조의2<br>8항  | 신용평가<br>회사           | 확인               | - <u>신용평가회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확인</u><br>- <u>신용평가 관련 고시 기준 위반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제공·수령 행위의 확인</u>                                                     |
| 387조의2<br>9항  | 명의개서<br>대행회사         | 확인               | - <u>명의개서대행업무 담당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확인</u>                                                                                                     |
| 387조의2<br>10항 | 금융투자<br>업자           | 확인               | - <u>금융투자업자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확인</u><br>- <u>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등의 금융위 고시 위반관련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행위의 확인</u>                             |
|               |                      | 징계기록<br>관리       | - <u>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u>                                                                                                             |
| 387조의2<br>11항 | 신탁업자                 | 신탁목적<br>달성       | - <u>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사무</u>                                                                                            |
| 387조의2<br>12항 | 소속기관                 | 등록<br>징계기록<br>관리 | - <u>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 투자권유자문 관리인력,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증권분석전문인력,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 신용평가전문인력 등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징계기록 유지 및 관리</u> |
| 387조의2<br>13항 | 거래소의<br>회원           | 이상거래<br>방지       | - <u>시장감시규정 준수에 따른 이상거래의 방지·관리</u>                                                                                                           |

## 5. 은행법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29조<br>1항 | 금융위,<br>금감원장 | 인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업의 인가 및 인가신청서의 제출</li> <li>-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li> </ul>                                                                                                                                                                                                                                                                                                                                                                                                                                                                                                                                                                                                                                                                                                                                                                                                                                                    |
|           |              | 승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및 금융위의 승인, 주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주식보유상황 보고 등에 관한 사무</li> <li>-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동일인 주식 보유한도 초과 소유 승인 및 관련 보고</li> <li>-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관련 승인, 명령 등</li> </ul>                                                                                                                                                                                                                                                                                                                                                                                                                                                                                                                                                                                                                                                                                                                                   |
|           |              | 감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li> <li>- 비금융주력자 및 동일인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및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li> <li>- 외국은행 또는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를 포함하는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li> <li>- 임원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사무</li> <li>-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무</li> <li>- 미공개 자료 요구 금지, 인사 또는 경영에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경쟁사 방해를 위한 신용공여 조기 회수 등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관련 사무</li> <li>-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위반 등으로 인한 은행 또는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사후 조치</li> <li>- 자회사 및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자회사 등과 거래시 제한 사항, 자은행의 금지사항, 자은행과 모은행 등 상호 간에 신용공여 제한 및 불량자산 거래 금지 등에 관한 사무</li> <li>- 업무보고서의 제출</li> <li>-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 개인·법인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관련 사무</li> <li>- 은행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사무</li> <li>-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에 관한 사무</li> <li>- 동일인의 해당 은행 주식보유현황 보고 및 주주에게의 직접인 자료 제출 요구</li> <li>- 정관변경, 자본금의 감소,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본점의 이전, 상호변경, 자회사 출자 등의 보고</li> </ul> |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    | 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및 사후조치</li> <li>- 대주주, 전환대상자, 승인받은 비금융조력자 등에 대한 검사 및 사후조치</li> </ul>                                                                                               |
|           |    |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에 대한 제재</li> <li>-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 및 회사의 주주, 임원, 사원, 업무집행사원 등에 대한 제재</li> <li>-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li> <li>-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li> </ul>                 |
|           |    | 인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합병·해산·폐업,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li> <li>- 외국은행의 지점·대리점 신설 및 폐쇄 인가, 인가받은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이전 및 사무소 신설</li> <li>- 국내은행,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인가 취소에 따른 청문</li> </ul> |
| 29조<br>2항 | 은행 | 감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지도기준 준수에 관한 사무</u></li> <li>- <u>불공정영업행위의 해당 여부 확인</u></li> </ul>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업무용 부동산 임대,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등의 부수업무,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에 관한 사무</u></li> </ul>                                                                                        |

## 6. 보험업법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89조 1항  | 보험요율 산출기관 의장                    | 정보요청    | - 요율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교통법규 위반자 또는 운전면허의 취득자에 관한 정보 요청                                                         |
| 89조 2항  | 보험요율 산출기관 의장                    | 요율산출    | - 교통법규 위반자별 보험요율 산출 및 보험회사에 제공 또는 열람 허용                                                                      |
| 89조 3항  | 금융위, 금감원장                       | 감독 검사   | -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 효력 관련 보험요율 산출·적용에 관한 감독·검사                                                                 |
|         | 보험요율 산출기관                       | 요율산출    | -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 효력 관련 보험요율 산출                                                                              |
|         | 보험회사                            | 요율적용 지급 | -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 효력 관련 자동차보험 계약의 체결·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험요율 적용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                                         |
| 102조 1항 | 금융위, 금감원장                       | 신고      | - 국내사무소 설치신고<br>- 보험설계사 등의 신고사항 처리                                                                           |
|         |                                 | 감독 검사   | -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br>-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br>- 자산평가의 방법<br>-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br>-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등의 심의 |
|         |                                 | 승인      | - 자회사 소유 승인·신고 또는 보고<br>- 자산운용비율 한도 초과 예외 승인                                                                 |
|         |                                 | 조치 명령   | - 금융위의 조치·명령                                                                                                 |
|         |                                 | 인허가     | - 보험회사의 해산·합병·계약이전 등의 인가<br>- 영업양도·양수의 인가                                                                    |
|         |                                 | 해산 파산   | - 청산인의 선임·해임<br>- 청산인에 대한 감독                                                                                 |
|         |                                 | 기타      | - 보험조사협의회 구성<br>- 영업보증금 예탁·관리                                                                                |
| 102조 2항 | 금융위 금감원장, 보험협회 의장, 보험요율 산출기관 의장 | 인허가     | - (외국보험회사 등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의)보험계약 체결 승인, 보험업 허가·승인 및 명령·예비허가, 손실보전 준비금적립액 산정,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
|         |                                 | 등록 관리   | - <b>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자격시험 운영·관리</b>                                   |
|         |                                 | 조치      |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                                 |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                          |                    | - 모집광고, 특별이익, 수수료지급, 신용공여한도, 채권 및 주식소유한도, 대주주와의 거래, 기초서류의 신고·작성·변경, 금융위의 명령, 설명의무 관련 사항, 통신수단 관련 준수사항, 보험계약 모집 또는 체결관련 준수 사항 등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
|            |                          | 감독<br>검사           | - 상호변경, 임원 선임, 최대주주 변경 등의 사유 발생에 따른 보고<br>- 검사 및 제재관련 자료의 제출, 검사, 제재, 통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br>-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
|            |                          | 임명                 | - <u>준법감시인 임면사실 통보의 접수</u>                                                                                                                                                                                                          |
| 102조<br>4항 | 보험협회<br>의장               | 자료제출<br>점검         | - 지급불능 보고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및 손해보험회사의 출연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br>- 차량수리비 실태 점검                                                                                                                                                               |
|            |                          | 기타                 | -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 외국보험사와의 생명보험계약 체결 등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 체결하는 건의 확인<br>- 보험회사의 업무 공동행위를 위한 상호협정에 따른 보험협회장의 사무<br>- <u>변액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의 운영·관리</u><br>- <u>보험가입 조회업무</u>                                                                |
| 102조<br>5항 | 보험회사                     | 보험계약<br>관리<br>책임이행 | -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의 지급<br>-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책임보험계약 또는 자동차보험계약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 이행<br>-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보험수익자 지정, 변경<br>-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 |
| 102조<br>6항 | 보험회사<br>등                | 등록<br>신고           | - <u>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록 및 금융위에의 신고</u>                                                                                                                                                                                                  |
| 102조<br>7항 | 손해<br>사정사,<br>손해사정<br>업자 | 손해사정               | - <u>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진술 등의 업무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 필요)</u>                                                                                                                  |

## 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26조의2<br>1항 | 금융위,<br>금감원장,<br>국세청장,<br>중앙회<br>회장 | 인허가      |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지점·출장소의 설치, 계약이전 협의 등 관련 인가                                                                                                                                                                                                                                                 |
|             |                                     | 승인       | -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 및 할부금융업에 대한 승인,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시 1년의 적합성 회복 기간 제한의 연장에 대한 승인<br>- 임직원, 대주주, 대주주의 친족 및 특수관계인 등과 부동산 양도·양수계약 체결시 금융위의 승인                                                                                                                                                  |
|             |                                     | 신고       | - 정관 변경, 업무의 종류 및 방법 변경, 영업 일부의 양수·양도, 본점이나 지점의 이전,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에 따른 신고                                                                                                                                                                                                                 |
|             |                                     | 감독<br>검사 | - 주주변경,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소유주식의 변동, 본점 이전 및 지점의 이전 또는 폐쇄, 본점 및 지점 등의 업무의 정지 또는 재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1일당 예금 등의 해지·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에서 예금 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금융위가 정한 기준 이상일 때의 보고<br>- 금융위의 감독 및 사후조치<br>- 금융위 자료제출 요구 및 금감원의 업무보고서 제출<br>- 금감원의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br>- (퇴직자포함)임직원 및 (중앙회포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청문 |
|             |                                     | 조치       | - 개별차주한도초과 신용공여·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를 보유하는 경우 등 경영지도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br>-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                                     | 임명       | - 준법감시인의 임명시 통지                                                                                                                                                                                                                                                                           |
| 26조의2<br>2항 | 중앙회장                                | 자율규제     | -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임직원에 대한 교육, 공동 이익 사업 등 중앙회 자율규제의 수행                                                                                                                                                                                                                                       |
| 26조의2<br>3항 | 상호<br>저축은행                          | 부대업무     | - <u>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은 부대업무에 관한 사무</u>                                                                                                                                                                                                                                         |

## 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2조1항        | 조합,<br>중앙회            | 등기           | - 설립등기                                                                                                                                                                                                                                                                   |
| 24조의2<br>1항 | 금융위,<br>금감원장,<br>중앙회장 | 인허가          | - 조합 및 중앙회의 설립, 조합의 합병·분할 인가<br>- 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 관한 사무                                                                                                                                                                                                                  |
|             |                       | 감독<br>검사     | - 감독·보고·검사 등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br>- 조합 및 중앙회의 업무보고서의 제출                                                                                                                                                                                                                      |
|             |                       | 조치           | -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에<br>대한 제재 및 행정처분<br>- <u>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징계관련<br/>조치 내용의 통보</u><br>- 조합에 대한 경영관리 및 이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
|             |                       | 선임           | - 임시임원의 선임, 경영관리, 부실조합에 대한 관리인의<br>선임에 따른 등기 및 등기촉탁<br>- 부실조합에 대한 관리인의 선임 및 파산 조합에 대한<br>파산관재인 추천                                                                                                                                                                        |
| 24조의2<br>4항 | 조합<br>또는<br>중앙회       | 공제계약<br>책임이행 |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수행을 위해><br>-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공제금의<br>지급 : <u>피공제자에 관한 정보</u><br>- 책임보험(상호보험, 재보험, 자동차보험 포함)에<br>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 : <u>제3자에 관한<br/>정보</u><br>- 공제수익자 지정 및 변경 : <u>공제수익자에 관한 정보</u><br>- 단체공제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공제금의 지급 :<br><u>피공제자에 관한 정보</u> |

## 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5조의2<br>1항 | 금융위,<br>금감원장                                                               | 등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li> <li>-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거부 또는 내용 변경 요구</li> <li>- 유동화자산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에 의한 등록</li> <li>-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li> </ul> |
|            |                                                                            | 해산<br>파산   | - 유동화전문회사의 해산 또는 파산에 따른 파산관재인·청산인의 선임                                                                                                                                                                                             |
|            |                                                                            | 조사<br>명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한 조사</li> <li>- 유동화전문회사 등 또는 자산관리자에 대한 업무개선 명령</li> </ul>                                                                                                                     |
| 5조의2<br>2항 | 유동화<br>전문회사<br>등,<br>자산평가<br>수행자,<br>자산<br>보유자,<br>자산<br>관리자,<br>업무<br>수탁자 | 등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u></li> <li>- <u>유동화자산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에 의한 등록</u></li> </ul>                                                  |
|            |                                                                            | 자산평가<br>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u></li> <li>- <u>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u></li> </ul>                                                                                                                 |
|            |                                                                            | 수탁업무       | - <u>자산보유자 등이 위탁받은 업무</u>                                                                                                                                                                                                         |

## 10.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11조의2<br>1항 | 휴면예금<br>관리재단                                                | 재단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금융기관이 재단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 및 운용,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감독 등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무</u></li> <li>-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품, 그 밖의 수익금에 따른 재원의 운영</li> <li>-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통지, 휴면예금의 지급 청구 등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사무</li> </ul> |
| 11조의2<br>2항 | 전국은행<br>연합회,<br>생보협회,<br>손보협회,<br>저축은행<br>중앙회,<br>종금협회<br>등 | 자료조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li> </ul>                                                                                                                                                                                                                               |
| 11조의2<br>3항 | 복지<br>사업자                                                   | 복지사업<br>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u></li> </ul>                                                                                                                                                                                                                  |
| 11조의2<br>3항 | 대통령,<br>금융위,<br>금융위<br>위원장,<br>이사장                          | 결격사유<br>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임직원의 결격사유 확인</u></li> </ul>                                                                                                                                                                                                                            |

##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7조1항 | 금융위,<br>금감원장 | 인허가<br>승인 | -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에 따른 인가<br>- <u>금융기관의 합병·전환 당시 동일인이 은행법상 주식<br/>보유한도(10%)를 초과한 경우, 예외적 주식 소유<br/>인정과 관련한 동일인의 인정, 신고수리 또는 승인</u>                                                              |
|      |              | 관리인<br>선임 | - 임원의 직무관련 적기시정조치, 업무집행정지에 따른<br>관리인 선임, 임원의 해임 권고, 계약이전 결정 등에<br>의한 관리인 선임과 이에 따른 등기 촉탁                                                                                                   |
|      |              | 심사        | -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타회사 주식에 관한 초과소유인<br>요건의 심사                                                                                                                                                    |
|      |              | 조치        | - <u>정부가 지원한 부실금융기관 관련 특정주주 소유<br/>주식의 소각·병합 명령에 관한 사무</u><br>-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타회사 주식에 관한 초과소유<br>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br>-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위 승인 없이 타 회사 주식<br>소유한도를 초과 소유한 경우, 임직원에 대한 시정조치 |
|      |              | 감독<br>검사  | - 피지원기관에 대한 검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br>및 진술 등의 요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br>-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 요구, 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br>등 피지원기관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
|      |              | 해산<br>파산  | - 금융기관 해산 또는 파산에 따른 청산인 또는 파산<br>관재인인의 추천                                                                                                                                                  |
| 7조2항 | 파산참가<br>기관   | 해산<br>파산  | - 금융기관의 해산·파산에 따른 예금자표의 작성                                                                                                                                                                 |

## 12.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4조          | 예보                 | 등기        | - 설립등기                                                                                                                                                                                                                                                                                    |
| 7조          | 예보<br>사장           | 대리인<br>선임 | - 재판상 또는 재판외 권한에 대한 대리인 선임                                                                                                                                                                                                                                                                |
| 24조의6<br>1항 | 예보,<br>금융위,<br>금감원 | 조치<br>조사  | - 부보금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br>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의 결정, 보험료 및<br>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보험금등의 계산 및<br>지급,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br>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조사<br>- 부보금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의 보험사고 위험관련<br>금융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br>- 금감원장에 대한 부보금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와<br>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사실여부 확인, 시정조치에<br>따른 결과 및 이행내역 송부 등 |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24조의6<br>2항 | 예보                   | 검사      | - 부보금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                                                                                                                                                                                                                                                                                                                                 |
|             |                      | 보험금 지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한 때, 정리금융기관이 영업 또는 계약의 양수 또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을 결정하거나 영업 또는 계약의 양수 또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을 한 때,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시,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대위청구</li> <li>-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및 계산</li> <li>- 보험금 및 가지급금 지급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 등의 권리 취득</li> <li>- 보험금지급시 예금 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li> </ul> |
|             |                      | 손해배상 청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인, 청산인 및 파산관재인 포함)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li> <li>- 손해배상의 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및 소송참가 등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구</li> </ul>                                                                  |
|             |                      | 수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 및 수납</li> <li>-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li> <li>- 예금자 등을 대신한 채권채무(보증채무제외)의 상계</li> </ul>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예보 임직원)</li> <li>- 최소비용의 원칙 및 관련 법규의 적용</li> </ul>                                                                                                                                                                                                                                             |
|             | 예보, 금융위              | 조치 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보 업무의 지도·감독·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집행 정지</li> <li>- 예보에 대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요구,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시설 기타 필요한 물건에 대한 검사</li> </ul>                                                                                                                                                                                      |
|             | 예보, 정리금융 기관          | 채권양수    | - 채권의 양수 및 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 및 이에 대한 지도·감독·검사</li> <li>- 예보, 정리금융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li> </ul>                                                                                                                                                                                                                         |
| 24조의6<br>2항 | 금융위, 한국은행 총재, 공사사장 등 | 결격사유 확인 | - <u>임직원에 대한 결격 사유 확인</u>                                                                                                                                                                                                                                                                                                                                |

### 13. 공사채등록법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52조 | 금융위,<br>등록기관 | 등록 | - <u>등록기관이 지정된 채권자·질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공사채의 등록 및 말소</u> |

### 14. 공중등협박목적에 의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3조의2 | 금융위 | 허가<br>이의신청 | - <u>공중 등 협박을 목적으로 한 행위와 관련한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 금융거래 허가 및 이의신청</u> |

###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11조의4<br>1항 | 시·도지사                      | 등록<br>검사 |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등록갱신,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검사, 영업정지, 등록취소, 교육, 실태조사, 분쟁조정 |
|             | 대부업및<br>대부<br>중개업<br>협회    | 교육       |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교육                                                    |
| 11조의4<br>2항 | 금감원장,<br>금융위,<br>행자부<br>장관 | 검사<br>조사 | - 검사 및 사후조치<br>-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
| 11조의4<br>3항 | 대부업자<br>등                  | 확인       | - <u>고용 제한 또는 업무 위임·대리 제한의 사유 확인</u>                                  |

### 1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9조 | 금융위,<br>금감원장 | 조치 | - <u>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u> |

##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24조<br>1항 | 금융위,<br>국세청장,<br>금감원장,<br>여전협회<br>장 | 인허가<br>등록  | - 영업의 허가·등록 및 모집인의 등록<br>- 모집인의 등록취소,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과징금의 부과                                    |
|           |                                     | 감독<br>검사   | - 모집인, 신용카드업자, 여전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조사, 자료제출 요구, 감독, 검사 및 사후조치<br>- 가맹점 및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여전사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무         |
|           |                                     | 신고<br>보고   | - 모집질서 위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보고서, 준법감시인 임면관련 신고, 보고                                                              |
|           |                                     | 승인         | - 자기자본 변동, 대주주 변경 등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시, 적합성 확보를 위한 기간 연장에 관한 승인                                             |
|           |                                     | 기타         | - 임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 결격사유 확인                                                                                 |
| 24조<br>2항 | 신용카드<br>업자                          | 등록<br>신고   | - <u>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u><br>- <u>신용카드 모집인의 벌규 또는 조치 위반 신고</u>                                                     |
|           |                                     | 기타         | - <u>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회원에 대한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책임 여부 확인</u>                                                              |
| 24조<br>3항 | 여전협회<br>의 장                         | 민원         | - <u>협회의 이용자 민원 상담·처리 중 모집질서 유지 의무 위반 관련 처리</u><br>- <u>협회의 이용자 민원 상담·처리 중 신용카드회원 등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출입국 사실 확인</u> |
|           |                                     | 등록<br>정보관리 | - <u>모집인 등록업무 관리를 위한 등록·취소 등 확인</u><br>- <u>협회의 회원간 신용정보의 교환 및 가맹점에 대한 정보관리</u>                                |

## 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11조의2<br>1항 | 금감원  | 공고<br>이의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정지조치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및 채권의 소멸</li> <li>-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li> <li>-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와 종료</li> </ul> |
|             |      | 환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li> <li>- 전액배상, 부당이득 취득 등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에 관한 사무</li> <li>- 소멸채권의 환급 청구</li> </ul>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따른 지정, 통지 및 통보</li> <li>-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이용계좌 신고자에 대한 포상</li> </ul>                                                 |
| 11조의2<br>2항 | 금융회사 | 확인         | - <u>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u>                                                                                                                                                  |

## 19-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3조<br>1항 | 금융회사<br>등 | 금융거래 | - 금융거래시 실지명의로 거래(시행령 제3조 제1호 참고) |

## 19-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10조 | 거래정보<br>등의<br>제공요구자 | 확인 | -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시 명의인의 인적사항 확인 |

## 20.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33조의4 | 금융위,<br>금감원장 | 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지주회사의 인가</li> <li>- 인가 및 금융지주회사요건에 따른 시정조치</li> <li>-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li> <li>- 금융지주회사의 해산 및 합병을 위한 인가</li> </ul>                                                                                                                                                                                                                                                                                                                                                                  |
|       |              | 승인<br>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의 공고 연기를 위한 승인</li> <li>-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인가 또는 금융지주회사 요건 비충족을 위한 기간 연장 승인</li> <li>-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게 된 경우 지배관계 해소를 위한 기간 연장의 승인</li> <li>- 대주주의 변경승인, 주식처분 명령 등</li> <li>-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및 보고, 주식 초과보유의 승인 등</li> <li>- 비금융주력자,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제한 초과보유를 위한 승인</li> <li>- 자회사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포함)의 편입 승인, 신고</li> <li>- 임직원의 겸직제한에 의한 승인, 보고 등</li> <li>- 자본금 감소 및 정관변경의 신고</li> <li>-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 보험지주회사·금융투자지주회사의 설립인가 및 신규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li> </ul> |
|       |              | 평가<br>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금융주력자,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등의 제출 정보 또는 자료 변경에 따른 보고</li> <li>-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료의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점검 등</li> <li>- 고객정보관리인의 보고</li> <li>-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관련 보고</li> <li>- 임원, 최대주주,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등의 변경, 상호 변경, 해산사유 발생 등에 따른 보고</li> </ul>                                                                                                                                                                                                                                                          |
|       |              | 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보유제한관련 외국은행 등의 동일인 범위 제외를 위한 국제적 신인도, 건전성 감독여부, 업무협조 관계 등의 요건 충족 여부 심사</li> <li>-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li> <li>-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주식 소유의무 심사 등</li> <li>-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소유의무 심사</li> </ul>                                                                                                                                                                                                                                                                                              |
|       |              |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보유한도 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li> <li>- 비은행지주회사등의 대주주와의 거래(신용공여, 주식취득) 등의 제한에 관한 사무</li> <li>- 금융지주회사등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li> </ul>                                                                                                                                                                                                                                                                                                                                                                |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사무</li> <li>-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에 관한 사무</li> </ul>                                                                                                     |
|    |    | 감독<br>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검사 및 사후 조치</li> <li>-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li> <li>- 업무보고서의 제출</li> <li>-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에 관한 사무</li> <li>- 재무제표의 공고를 위한 전자문서의 제출</li> </ul> |
|    |    | 제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행정처분</li> <li>-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li> <li>-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li> <li>-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li> <li>- 주식처분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li> </ul>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무</li> <li>- 경영공시에 관한 사무</li> </ul>                                                                                                                                   |

## 21.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10조 | 증선위,<br>증선위<br>위원장<br>금감원장,<br>거래소,<br>공인<br>회계사회 | 감리<br>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 자료 제출의 요구, 조사, 조치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li> </ul>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회계정보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사무</li> </ul> |

## 2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5조의2 | 금융회사<br>등 | 신원확인 | -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1만 US달러 또는 2천만원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 확인 |

## 22-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16조 | 금융정보<br>분석원장,<br>한은총재,<br>금감원장<br>등 | 보고<br>통보   |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법 제4조 참조)<br>-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br>-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 대한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
|     |                                     | 자료제공<br>교환 | - 특정금융거래정보 등 관련 정보의 검찰총장, 국세청장, 금융위 등에의 제공<br>-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관련 정보의 교환<br>-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자료 제공 요청        |
|     |                                     | 감독         | - 금융회사등의 감독, 검사                                                                                                  |

##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6조2항      | 공사                       | 등기         | - 설립등기의 기재                                                                                                                                                                                                                                            |
| 10조       | 공사<br>사장                 | 등기         | - 대리인 선임에 따른 등기                                                                                                                                                                                                                                       |
| 37조의<br>2 | 금융위,<br>금감원장,<br>공사<br>등 | 보증<br>채권관리 | - 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 등에 관한 사무<br>-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br>- 신용보증관련 사무<br>-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br>-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사무<br>-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br>-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등<br>- 주택저당채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br>-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
|           |                          | 조사         | -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용조사                                                                                                                                                                                                                         |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    |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li> <li>-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li> </ul>                                                                                                                                                                         |
|    |    | 공사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유동화, 채권보유,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 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 신용보증 및 관련 구상권 행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및 관련 구상권 행사,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 승인을 받은 업무</li> </ul> |
|    |    | 감독<br>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및 결산,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여유자금의 운용,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금의 결산 등의 업무에 관한 감독</li> <li>- 공사로부터의 업무수탁자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li> </ul>                                                                                       |
|    |    | 자료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li> </ul>                                                                                                                                                                |

## 24.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2조2항 | 한국산업은행장      | 등기             | - 설립등기의 기재                                                                                                                                                                              |
| 6조1항 | 한국산업은행장      | 등기             | - 대리인 선임에 따른 등기                                                                                                                                                                         |
| 42조  | 금융위,<br>금감원장 | 감독<br>검사<br>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의 임면</li> <li>- 임원에 대한 조치 및 직원에 관한 처분 요구, 퇴직 직원에 관한 통보 등</li> <li>- 감독,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li> <li>- 보고서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li> </ul> |

## 25.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2조<br>2항 | 중소기업은행장      | 등기       | - 설립등기의 기재                                                                                                        |
| 6조       | 중소기업은행장      | 등기       | - 대리인 선임에 따른 등기                                                                                                   |
| 31조의2    | 금융위,<br>금감원장 | 감독<br>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li> <li>- 보고서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li> </ul> |

## 26.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24조<br>1항 | 예탁<br>결제원  | 권리행사     | - 전자단기사채등의 권리 행사                                                       |
|           |            | 발행<br>통지 | - 채권자증명서의 발행<br>-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소유 내용 통지에 관한 사무                          |
| 24조<br>2항 | 계좌관리<br>기관 | 계좌개설     | - 고객계좌의 개설                                                             |
|           |            | 등록<br>말소 | -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질권 설정 및 말소 등록<br>-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br>및 말소 등록 |
|           |            | 권리행사     | - 원리금 수령이나 그 밖에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권리<br>행사                                   |
|           |            | 발행<br>통지 | - 채권자증명서의 발행<br>-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소유 내용 통지에 관한 사무                          |

## 27.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6조2항      | 설립위원                     | 등기       | - 이사 및 감사 등의 등기                                                                                                                                                                                                                                                                            |
| 26조<br>1항 | 신용보증<br>기금,<br>업무<br>수탁자 | 보증관련     | -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경영지도,<br>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구상권의 행사,<br>이에 따른 부수업무 등<br>- 채보증 업무<br>-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유동화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에<br>따른 보증<br>-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따른 보증연계<br>투자<br>-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에 따른 조사의무의 이행<br>- 보증관계의 성립에 따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br>될 자에 대한 통지<br>- 보증채무의 이행<br>- 구상권 행사의 유예 |
|           |                          | 자료제공     | - 국가, 자자체,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단체에 대한<br>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
| 26조<br>2항 | 금융위,<br>금감원장             | 감독<br>검사 | - 감독·보고·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

## 2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11조의4<br>1항 | 관리기관,<br>업무<br>수탁자 | 보증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보증에 따른 신용조사 및 구상권의 행사 및 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의 승인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li> <li>-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에 관한 사무</li> <li>- 농림수산업자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에 관한 사무</li> <li>- 보증채무의 이행</li> <li>- 구상권의 행사</li> </ul> |
|             |                    | 자료제공 | - 국가, 자자체,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단체에 대한 자료 제공의 요청                                                                                                                                                                                                                 |
| 11조의4<br>2항 | 금융위,<br>금감원장       | 감독   | -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

## 2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14조         | 기금           | 등기       | - 설립등기시 이사장·전무이사·이사 및 감사의 기재                                                                                                                                                                                                                                         |
| 30조의2<br>1항 | 수탁자          | 기금업무     | - 기본재산의 관리, 기술신용보증, 일반신용보증, 보증 연계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신용 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기술평가, 구상권 행사 및 이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금융위 승인을 얻은 업무                                                                                                                                               |
|             |              | 보증<br>구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보증 업무</li> <li>-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유동화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에 따른 보증</li> <li>-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에 따른 보증연계 투자</li> <li>- 보증의 기준에 관한 사무</li> <li>- 보증관계의 성립에 관한 사무</li> <li>- 보증채무의 이행</li> <li>- 구상권의 행사</li> <li>- 구상채권의 매각</li> </ul> |
|             |              | 자료제공     | - 국가, 자자체,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단체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
|             |              | 기타       | - 업무방법서에 관한 사무                                                                                                                                                                                                                                                       |
| 30조의2<br>2항 | 금융위,<br>금감원장 | 감독 등     | - 감독·보고·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

### 3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10조 | 공사                  | 등기         | - 지사 또는 출장소 등기시 사장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
| 13조 | 공사사장                | 등기         | - 대리인 선임 등기시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
| 38조 | 공사                  | 자산처분<br>운용 | -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무<br>- 행정상 제한, 용도상 제약 등으로 매각에 장애가 있는 경우 부동산 처분의 촉진에 관한 사무<br>- 동산·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운영 |
|     |                     | 자료제공       | -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이용                                                                     |
|     | 금융위,<br>금감원장,<br>공사 | 감독         | -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
|     |                     | 보고<br>검사   | - 보고·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

#### 31-1. 공인회계사법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23조<br>2항 | 공인<br>회계사 | 설립 | - 회계법인 설립시 정관 기재 사항 |

#### 31-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조항    | 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
| 38조의2 | 금융위,<br>징계위,<br>국세청장,<br>공인<br>회계사회,<br>금감원장 | 시험관리      | - 공인회계사시험 관리                                                   |
|       |                                              | 등록        | -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 회계법인의 등록 및 등록취소                   |
|       |                                              | 징계<br>과징금 | -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br>-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징수 |

(참고)

## 관계 법령

###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 (대리인의 선임)**

① 원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지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4.8.6.>

1.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조치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 1의2. 법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 제23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7조에 따른 등기에 관한 사무
- 3의2. 법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른 검사, 제재, 보고 및 자료 제출과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5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57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58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과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59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와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60조에 따른 보고·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61조제2항·제3항에 따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및 집행정지와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65조에 따른 자료협조에 관한 사무
  12. 법 제65조의2에 따른 조사 의뢰, 자료요청 및 협조의뢰에 관한 사무
  13. 법 제67조에 따른 협조요청(다만, 법 제3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
  - ② 법 제4조,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른 추천·제청·임명의 권한이 있는 자는 그 추천·제청·임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 [본조신설 2012.1.6.]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지배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겸업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임원 겸직 승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제4항·제5항·제7항에 따른 시정요청 처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45조에 따른 감독·검사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4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등을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채권추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검업 업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사무

3. 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채용·고용 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등을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등을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① 전자금융거래법

#### 제16조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①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화폐발행자”라 한다)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지명”라 한다)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 3 - ②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3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

다. [개정 2013.11.22]

1. 법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 제29조, 제33조에 따른 허가 및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2의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예비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제6항 및 제44조에 따른 조치, 청문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동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42조에 따른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8. 법 제45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45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 ②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소비자원(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제6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 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접근매체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
-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4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등)

- ⑩투자회사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8항에 따른 보고를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제7호·제10호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3.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제202조 (해산)

①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3. 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4. 투자회사의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②투자회사는 해산한 경우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2. 청산인 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정하도록 하거나 2인 이상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③투자회사는 해산한 경우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산감독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를 둔다.

⑤투자회사가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된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3.8.29]]

⑥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제1항제5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2.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없는 경우
3. 「상법」 제193조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⑦투자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⑧금융위원회는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

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⑨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해임한 경우

### 제268조 (설립 및 등록)

①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 제268조 (설립 및 등록)

①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 4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① 법 제152조제6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는 의결권피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1.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
2. 의결권권유자 등 의결권을 위임받는 자
3. 의결권피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
4. 위임할 주식 수
5. 주주총회의 각 목적사항과 목적사항별 찬반(贊反) 여부
6. 주주총회 회의시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또는 수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여부와 위임 내용
7. 위임일자와 위임시간
8. 위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 제238조 (해산의 보고 등)

청산인은 법 제2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57조, 제3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20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제387조제3항 및 별표 20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제2431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13.7.5, 2013.8.27,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예비인가 및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통보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공시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6. 법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43조, 제53조, 제253조, 제257조, 제262조, 제267조, 제282조, 제293조, 제307조, 제323조의20, 제335조, 제354조, 제359조, 제364조, 제369조 및 제372조에 따른 조치 및 처분에 관한 사무
8. 법 제51조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 8의2. 법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90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19조 및 제122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2. 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134조, 제136조 부터 제139조까지 및 제143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문서, 철회신고서 및 공개매수결과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 13의2. 법 제145조에 따른 주식등 처분명령에 관한 사무
14. 법 제146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147조,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위반 주식등의 처분명령, 조사 및 정정 보고에 관한 사무
16. 법 제153조 및 제155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 및 의견표명 서면의 제출에 관한 사무
17. 법 제156조, 제158조 및 제164조에 따른 정정요구,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18.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9. 법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0. 법 제167조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초과 승인 및 시정에 관한 사무
21. 법 제169조에 따른 자료제출, 보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 21의2.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22. 법 제173조에 따른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23. 법 제173조의2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 23의2. 제20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매도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무
24. 법 제20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
25. 법 제221조에 따른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
26. 법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7. 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8.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9. 법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 29의2. 법 제272조의2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에 관한 사무
- 29의3. 법 제323조의4 및 제323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및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 29의4. 법 제323조의16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무
30.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 30의2. 법 제335조의4 및 제335조의5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인가 및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31. 법 제343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무
32. 법 제349조,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33. 법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에 관한 사무
34. 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35. 법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 35의2. 법 제373조의3 및 제373조의4에 따른 거래소의 인가 및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36. 법 제410조 및 제411조에 따른 거래소에 대한 보고, 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7. 법 제417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무
38. 법 제4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에 관한 사무
39. 법 제420조 및 제422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40. 법 제42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조치 및 공표에 관한 사무
- 40의2. 법 제435조에 따른 위법행위 신고·제보의 접수·처리·통지 등에 관한 사무
- 40의3. 법 제44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 40의4. 제10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제16호 또는 제17호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되는 관련 자료의 접수에 관한 사무
41. 제188조에 따른 외국인의 투자등록 등 업무에 관한 사무
- ② 금융감독원장(제372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13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46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8조 및 제1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410조에 따른 거래소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19조(법 제43조, 제53조, 제252조, 제256조, 제261조, 제266조, 제281조,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및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426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441조제3호에 따른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및 소속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 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③ 협회 또는 법 제288조의2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제4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51조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90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86조제1항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업무
4. 법 제286조제1항제4호 및 제288조의2에 따른 사전심의업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88조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289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④ 거래소 또는 법 제402조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134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무
2. 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3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5. 법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73조에 따른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73조의2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 7의2. 법 제37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업무 중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조사·감리에 관한 사무
- 7의3. 법 제383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405조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사무

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16 제2431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 1의2. 법 제189조제7항에 따른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 1의3. 법 제2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무
2. 법 제296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명의개서대행에 관한 사무
- 2의2. 법 제304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 2의3. 법 제309조에 따른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14조에 따른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315조에 따른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18조에 따른 실질주주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7. 법 제319조에 따른 실질수익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 ⑥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7.5,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323조의16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관·관리·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323조의17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 ⑦ 증권금융회사는 법 제328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⑧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335조의14제1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324조의8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제공·수령 행위의 확인에 관한 사무
- ⑨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법 제367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⑩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68조제5항제3호, 제87조제4항제3호, 제99조제4항제4호 또는 제10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제공·수령 행위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제30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직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사무
    - ⑪ 신탁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관리·처분·운용·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⑫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가 소속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에 필요한 사무
  2. 제30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사무
  - ⑬ 법 제387조제2항에 따른 회원은 법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무로서 이 영 제355조에 따른 이상거래를 방지·관리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5 은행법 시행령

###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금융위원회(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 및 이 영 제3조에 따른 신청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2 및 이 영 제3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 이 영 제4조의2, 제8조에 따른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등에 관한 사무
  5. 삭제 [2014.2.11]
  6. 법 제15조의3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에 관한 승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의4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보고사항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의2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의3에 따른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의4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6조의5에 따른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무
  12. 법 제18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23조의3, 이 영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35조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관한 사무
  15. 법 제35조의2 및 이 영 제20조의5에 따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35조의3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자본증권의 취득한도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35조의4에 따른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관한 사무
  18. 법 제35조의5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9. 법 제37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에 관한 사무
  20. 법 제43조의2에 따른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47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
  22.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23. 법 제48조의2에 따른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24. 법 제53조에 따른 은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25. 법 제53조의2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26. 법 제54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27. 법 제54조의2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28. 법 제55조 및 이 영 제24조의7에 따른 합병·해산·폐업의 인가에 관한 사무
  29. 법 제58조 및 이 영 제24조의8에 따른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에 관한 사무
  30. 법 제6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31. 제4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무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2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보호예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수납 및 지급대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관한 사무
  4. 법 제34조제2항제4호 및 이 영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지도기준 준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52조의2 및 이 영 제24조의4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의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6 보험업법 시행령

### 제89조 (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0항 및 제13항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1.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2. 교통법규의 위반일시 및 위반 항목
3. 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4. 운전면허의 범위, 정지·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취소일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하여 교통법규 위반자별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요율의 산출·적용에 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험요율 적용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24]

[본조제목개정 2014.7.14]

##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사무소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9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예탁·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9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의 신고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07조에 따른 자산운용비율 한도 초과 예외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11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12조에 따른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114조에 따른 자산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15조, 제117조에 따른 자회사 소유 승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118조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10. 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등의 심의에 관한 사무
11. 법 제131조(법 제1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1조의2에 따른 조치,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39조에 따른 해산·합병·계약이전 등의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50조에 따른 영업양도·양수의 인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156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무
15. 법 제160조에 따른 청산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163조에 따른 보험조사회의회 구성에 관한 사무

②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3조 단서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 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 및 명령,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전 준비금적립액 산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74조에 따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84조, 제87조, 제89조, 제182조, 제183조, 제186조 및 제187조에 따른 보험설계

- 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자격시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90조 및 제19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에 관한 사무
  8. 법 제130조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133조·제134조(법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5조 및 제179조에 따른 자료 제출, 검사, 제재, 통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2조에 따른 조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9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12. 제23조제3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사실 통보의 접수에 관한 사무
-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 제176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이 영 제86조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95조의5에 따라 중복계약의 체결을 확인하거나 이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확인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
  2. 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상호협정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
  3. 법 제169조, 제170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및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 3의2. 제56조제2항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4. 제84조제4호에 따른 차량수리비 실태 점검에 관한 사무
  5. 제84조제6호에 따른 보험가입 조화에 관한 사무
- ⑤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6.1]
1.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2. 「상법」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726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3.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4.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 ⑥ 보험회사등은 법 제84조, 제87조 및 제9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⑦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8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제2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금융위원회(법 제38조의7제3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1. 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4조의9에 따른 인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른 신고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의6, 제11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에 따른 승인 및 심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2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에 따른 자료제출 및 업무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 제29조, 제35조의3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청문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38조의2 부터 제3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11. 제8조의2제7호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사무

12. 제12조의2에 따른 통지 등에 관한 사무

② 중앙회 회장은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2.11]

③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호예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부대업무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제2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제2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7조 및 제8조(법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3조에 따른 감독·보고·검사 등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83조의4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84조제4항, 제86조의3, 제86조의4제6항에 따른 등기 및 등기축탁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6. 법 제86조 및 제86조의2에 따른 경영관리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86조의4제5항 및 제88조의2에 따른 관리인 선임 및 파산관재인 추천에 관한 사무

8. 법 제9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중앙회 또는 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법 제71조의2제6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제한 확인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80조의2제4항 및 제80조의4에 따른 예탁금 등 변제 및 채권의 취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0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83조의4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8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조치·보고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③ 조합(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28조에 따른 임원 등의 자격제한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 대리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호예수에 관한 사무

④ 조합 또는 중앙회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 또는 제7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상법」 제639조 및 제664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2. 「상법」 제664조 및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726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 「상법」 제664조 및 제733조에 따른 공제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공제수익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

4. 「상법」 제664조 및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공제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시행령

### 제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거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청산인 등의 선임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의2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② 유동화전문회사등,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를 수행하는 자,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10 휴면에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재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27조 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사무

②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7조에 따른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화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복지사업자는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④ 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른 제청·임명·추천·임면의 권한이 있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6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제2431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4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인정, 신고수리 또는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제7항,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소각·병합 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추천에 관한 사무

4.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검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의 요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의9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승인 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 ② 파산참가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예금자표의 작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16 제2431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12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제24조의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금융위원회(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장(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21조에 따른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의2제1항·제3항·제4항·제7항·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의3제1항(법 제35조의7 및 제35조의8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 및 수납에 관한 사무
8. 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에 관한 사무
9. 법 제31조에 따른 보험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사무
11. 법 제35조에 따른 채권의 취득
12. 법 제3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무
13. 법 제35조의6에 따른 대위상계에 관한 사무
14.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인의 업무
15. 법 제36조의5제1항·제2항·제4항·제5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16. 법 제38조의3에 따른 채권의 양수 및 관련 자료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무
17. 법 제38조의4에 따른 최소비용원칙의 적용 등을 위한 사무
18. 법 제38조의6에 따른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
- ② 법 제9조,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위촉·추천·제청·임면의 권한이 있는 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13 공사채등록법 시행령

### 제5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법 제4조에 따른 공사채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14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금융회사등과의 금융거래 등에 대한 허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의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시·도지사(제11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3조의3에 따른 등록증 반납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 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5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검사,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

②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3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③ 대부업자등은 법 제9조의5에 따른 고용 제한 또는 업무 위임·대리 제한의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4조의3제3항, 제58조제7항 및 이 영 제2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허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4,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5제4항, 제18조의2, 제50조의8,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조사, 자료 제출 요구, 감독,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의5제5항, 제50조제3항·제4항, 제54조 및 이 영 제19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 제19조의2, 제50조의6에 따른 준수사항, 내부통제기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50조의3, 제50조의4제4항 및 제50조의5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②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한 책임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 ③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업무의 관리를 위한 법 제14조의4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상담·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업무 중 신용카드회원등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출입국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6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교환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무
-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및 채권의 소멸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와 종료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소멸채권 환급 청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의2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②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19** -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 **19** -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개정 2002.6.29, 2004.7.29, 2005.8.17, 2008.2.29 제20653호(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 4.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

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 제10조 (인적사항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1. 명의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시 명의인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번호를 포함한다)
3. 계좌번호
4. 증서번호
5. 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누구의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 20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33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1. 법 제3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7조의2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8조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5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8조의3에 따른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8조의6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은행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조에 따른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16조, 제1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 신고에 관한 사무
14. 삭제 <2014.11.24.>

15. 법 제22조 부터 제24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승인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에 관한 사무
  17. 삭제 <2014.11.24.>
  18. 법 제39조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에 관한 사무
  19. 법 제41조의5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20. 법 제43조의2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주식 소유의무 심사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43조의3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소유의무 심사 등에 관한 사무
  22. 법 제45조, 제45조의2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사무
  23. 법 제45조의3에 따른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에 관한 사무
  24. 법 제45조의5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에 관한 사무
  25. 법 제47조에 따른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무
  26.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7. 법 제49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8. 법 제51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9. 법 제51조의2에 따른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0. 법 제54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31. 법 제55조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32. 법 제55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33. 법 제56조에 따른 공시에 관한 사무
  34. 법 제57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35. 법 제57조의2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무
  36. 법 제57조의3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37. 법 제58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무
  38. 법 제59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39. 법 제60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40.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41. 법 제64조 및 제6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42. 법 제69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무
-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2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증권선물위원회(제9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감리, 자료 제출의 요구, 조사, 조치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의3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사무
-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22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 22 -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정보분석원장(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2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1조에 따른 감독·검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1.16 제2431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시행일 2013.3.22]]

##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제6조 (설립등기)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납입액
6. 지사 또는 출장소
7. 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부사장·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9.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6.22]

### 제3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61조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사(법 제45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제2호, 제22조의2, 제23조 부터 제25조까지(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 제29조·제30조(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제1항제7호 및 제37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
  4. 법 제22조제1항제8호,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제1항제9호, 제43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제1항제10호, 제43조의3, 제43조의4, 제43조의10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제1항제11호,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
  11. 법 제45조제1항(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
  13. 법 제60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14.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에 관한 사무
  15. 법 제64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24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2조 (설립등기)

②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29, 2009.5.29]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의 소재지
5. 자본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6.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수
7. 은행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 제6조 (대리인 선임등기)

① 「한국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이 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동조의 대리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29, 2005.12.28, 2009.5.29] [[시행일 2009.6.1]]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삭제 [1997.11.29]
3. 대리인의 권한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제한

### 제4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독,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 25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 제2조 (설립등기)

②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 및 출장소의 소재지
5. 발행할 주식의 총수
6. 자본의 총액
7. 1주의 금액
8.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수
9. 은행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전무이사·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1. 공고의 방법

**제6조 (대리인 선임등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1·29]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삭제 [97·11·29]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3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26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채권자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소유 내용 통지에 관한 사무

②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고객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질권 설정 및 말소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채권자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소유 내용 통지에 관한 사무

## **27**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 **제6조 (설립등기)**

②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14]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지점 및 출장소
5. 설립시의 기본재산
6. 이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7. 전무이사·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금(제24조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보증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유동화회사 보증 등의 업무에 관한 사무
- 3의2. 법 제23조의4에 따른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에 따른 조사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유예에 관한 사무
8.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에 관한 사무

② 금융위원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2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2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 제11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관리기관(제11조의3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의2에 따른 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② 금융위원회(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29 기술신용보증법 시행령

### 제14조 (설립등기)

법 제16조에 따른 기금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 및 출장소의 소재지
5.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6. 이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7. 전무이사·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6.22]

### 제3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금(제30조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재보증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의3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의4에 따른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관한 사무
  6. 법 제30조에 따른 보증의 기준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보증관계의 성립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9. 법 제37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10. 법 제37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무
  11. 법 제50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 ② 금융위원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7조에 따른 보고·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6.22]

## 30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 (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뜻
2. 신설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다른 지사 및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6호의 사항과 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전문개정 2014.3.24]

**제13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의 사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대리인(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한정한다)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전문개정 2014.3.24]

**제3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부동산 처분의 촉진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동산·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운영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5. 법 제47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보고·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31 - ①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설립)**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시행일 2016.7.2]]
5. 출자 1좌(座)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填)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 [전문개정 2011.6.30]

## 31 - ②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52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시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 제24조, 제40조의4 또는 제40조의7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 제39조, 제40조의6, 제40조의8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무
  5. 법 제52조의2 부터 제5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